

# 거창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1. 24. 10:00

제5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심사보고자 :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 현 영 의원
- 심사보고의안명 : 거창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사경과 및 결과

○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 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사무의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 가. 개정 이유

○ 지역개발사업과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단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에 걸쳐 건립된 현대아파트

- 김천리와 대평리에 걸쳐 건립중인 김천리 주공아파트
- 가조면 석강리와 기리에 걸쳐 조성중인 석강농공단지
- 거창읍 김천리 도로개설지구 및 가조면 기리 경지정리지구 등 5개 지역 38필지의 불합리한 행정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 행정구역 변경내역

시설지역별				변 경
	지 번	필지수	지적(m <sup>2</sup> )	
계		38	30,303	
현대아파트	읍.가지리1333 외 1	2	11,331	상림리로
김천리주공 아파트	읍.대평리 1303-1등	6	1,058	김천리로
김천리도로	읍.김천리 46등	2	896	대평리로
개설지구	읍.대평리1473-15	1	127	김천리로
석강농공지	가조면기리394등	26	16,191	석강리로
기리경지 정리지구	가조면동례리1739-3	1	700	기 리 로

## 다. 심사결과

○ 거창군에서는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입법 예고를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신경남일보와 경남신문에 게시 공고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또한 관련 주민들로부터 이견이 전혀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거,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거창군에서는 이에 따른 각종 공부 정리가 소유자의 부담이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2. 거창군 사무의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 가. 개정 이유

○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신규 읍·면 위임 업무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사회복지과 소관)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소관)

○ 군 환원 업무

°구호환자 진료신청    °쓰레기 매립장 관리

○ 관련 법.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명칭 변경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용자금 상환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용자금상환

°농지전용(3,300m<sup>2</sup> 이하)⇒농지전용신고(농지법 시행령 제41조)

○ 조례 통·폐합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

○ 삭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에의한용자금상환

°농가, 비농가 증명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농지전용신고로 갈음)

°군 농기계 관리

°별표2(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 기타 위임 사무를 실·과별로 재분류

## 다. 심사결과

○ 위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수임자에게 이양하여, 그것을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 내용은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 1. 24.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 현 영 의원